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부서)의 장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7-98호
2017. 12. 22.(금)

차 례

조 례(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7호) ····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8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9호)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조례 제1260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61호)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조례 제1262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조례 제1263호) ·····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조례 제1264호) ·····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조례 제1265호) ·····3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66호) ·····37

규 칙(1)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43호) ···39

고 시(3)

-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고시 제2017-249호) ·····4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7-250호) ·····45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252호) ·····46

차 례

공 고(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980호) ·····4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981호) ·····4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989호) ·····49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와동2) 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17-991호) ·····51

행정예고(1)

- 차량 통행 높이 제한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17-997호) ·····52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감사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 · 법””을 ““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위촉하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고, 위법소지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함(제13조제2항).

○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1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

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5개의 조례를 정부조직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5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함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변경

→ “안전행정부(장관)” 을 “인사혁신처(장)” 으로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을 “인사혁신처(장)” 으로 변경

→ “중소기업청(장)”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해당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번”을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의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항제1호”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의 규정에”를 각각 “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제2조).

○ 본 조례에서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약칭(“법”) 사용이 누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추가함(제3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7조).

○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함(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

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기준)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구청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뜻과 기본원칙을 정함(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 영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4조).

○ 편의지원 신청, 지원여부 결정, 편의지원의 범위 및 적용 배제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8조).

○ 전문기관 지정, 사업의 위탁 및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시행규칙에 의하여”를 “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상인″이라 함은”을 ““상인”이란”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점포″라 함은”을 ““점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시시장″이라 함은”을 ““임시시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상점가″라 함은”을 ““상점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편의시설″이라 함은”을 ““편의시설”이란”으로,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을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및 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상인회″라 함은”을 ““상인회”란”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중 “고객지원센터 및 비가림시설”을 “고객지원센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가목 내지 마목”을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신청에 의하여”를 “신고에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를

“다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부와 시ㆍ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를 “제23조”로,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예의 범위 안”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예산의 범위 안”을 “경우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3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한다.

제39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영 제35조의 규정”을 “영 제3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이나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활성화구역” 을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제2조).

○ 법령과 중복 기재로 규정실익이 없거나,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시장의 기준 등을 정한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6조).

○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앴는바,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제7조).

○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26조).

○ 상인회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규제 조항을 삭제함(제30조).

○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일부내용을 삭제함(제3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4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월	2,053,900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별표2).

- 당초 1,984,500원 ⇒ 변경 2,053,900원 / 69,400원(3.5%) 인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제2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내용을 정함(제4조)

○ 구청장의 평화통일교육 사업 수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정함(제1조).

○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정의에 대해 정함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6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3.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 및 대전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덕구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6조까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업무 위탁 운영 근거를 정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6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체계의 통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중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개정함(제10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4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	담당	실·과장	결재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목 적 지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유 류		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		운 전 원	
배차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목 적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		운행거리	Km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에 사용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3개의 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등 3개의 규칙에 대하여 개정함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참”을 “지각”으로 변경

→ “불입”을 “납입”으로 변경

→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7- 249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Ⅰ. 건 명 :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② 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의 적용)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⑧ 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Ⅱ. 건　명 :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60,571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적용요령 ④시가표준액 산출예시 ⑤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 12,454종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적용요령 ⑤산출예시 ⑥기준가격표

다. 선　　박 : 136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감가율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기준가격 ⑥잔가율표

라. 항 공 기 : 237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적용요령 ④항공기 기준가격표

마. 시 설 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산출방법

사. 입　　목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 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시가표준액 적용요령

아. 어 업 권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시가표준액 적용방법 ⑤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⑥어업권 내역

자. 광 업 권

①용어정의 ②광업권의 대상 ③용어해설 ④시가표준액

차. 회 원 권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카. 지하자원

①용어정의 ②지하자원(광물)의 대상 ③용어해설 ④시가표준액

⑤지하자원 적용가액

2. 세부결정사항 :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 2017 - 250 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항 및「지적측량시행규칙」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평면직각종횡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058	318075.82	237233.11	318075.04	237235.99	재설치
도근점	2603	322406.02	237947.93	322408.03	237946.88	〃
도근점	2604	322454.31	237939.17	322460.54	237936.07	〃
도근점	5094	322506.23	237954.61	322503.67	237957.55	〃
도근점	5098	322119.35	238402.81	322124.59	238458.94	〃
도근점	5097	322130.22	238313.96	322117.05	238417.41	〃
도근점	5807	322127.39	238253.36	322140.20	238266.26	〃
도근점	2321	326521.15	237802.87	326519.19	237800.60	〃
도근점	2710	-	-	325854.76	239006.39	신설
도근점	2711	-	-	326315.55	239178.84	〃
도근점	2712	-	-	326350.78	239173.81	〃
도근점	2713	-	-	326343.76	239113.31	〃
도근점	2714	-	-	326327.32	239005.78	〃
도근점	2715	-	-	322226.07	238994.44	〃
도근점	2716	-	-	322172.58	238737.58	〃
도근점	2717	-	-	322094.26	238621.36	〃
도근점	2718	-	-	322175.89	238233.89	〃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와동, 덕암동, 평촌동, 장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17년 12월 12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표지재질(철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7-252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덕암동 52-1	덕암로234번길 14	2017.12.22.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이현동 273	대청호수로1325번길 31-40	2017.12.22.	건물신축	대청호수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3,2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381-6	오정로38번안길 9-7	2017.12.22.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중리동 178-9	중리남로8번길 8-5	2017.12.22.	건물신축	중리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폐 지 도 로 명 주 소	도 로 명 주 소 폐 지 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한남로137번길 47	2017.12.212.	건물멸실	
한남로137번길 49	2017.12.22.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980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 -79호	배수시설 오·우수분리 공사	계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아랫물길(주)	하수관	아스팔트	32.0	32.0
		덕암동 43-7번지				1.5	1.5
		덕암동 5-29번지				5.5	5.5
		덕암동 18-2번지				5.0	5.0
		덕암동 46-2번지				20.0	20.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일간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981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 -80호	도시가스관 철거	계	CNCITY에너지	가스관		7.0	14.0
		법동 284-10번지 앞			아스팔트	3.0	6.0
		법동 284-9번지 앞			소형고압블럭	4.0	8.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9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산업단지 내(소로3-문평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거소 불명 등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내(소로3-문평1호선) 도로개설공사	2017. 09. 29. ~ 2018. 12.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04-2 일원	도로개설 L=81.6m, B=6.0m (사업면적 509.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공고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8. 01. 05.(15일간)

○ 공고장소 : 대덕구청(건설과) 및 전구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17. 11. 23.(목) ~ 수용재결 신청 통보 전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별관 3층)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2부(매도용 인감, 일반용), 토지대장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예금통장(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

4. 공시송달 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대덕구 문평동	99-9	도	99	99	(주) 인쇄미디어					분할전 (문평동 99-3)

※ 보상금액은 방문 시 공개

5. 처리계획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할 것이며,

○ 재결결과에도 협의 불응할 경우 같은 법 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규정에 의거 공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9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와동2) 공사완료 공고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3-와동2)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과(☎042-608-511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아 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3-와동2)
- 사업의 명칭 :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덕구 와동 26번지 ~ 장동 692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1,216m, B=4~6m(편입면적 12,39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시행기간 : 2012. 05. 11. ~ 2017. 9. 22.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997호

차량 통행 높이 제한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의 도로개설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차량 통행 높이 제한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목적 : 도로 개설과 관련 교통 체증 해소와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으로 차량 통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설치장소

연번	주소 (장 소)	설치 높이 및 폭
1	대덕구 오정동 705-202번지 일원	2.3m / 7m

5. 예고기간 : 2017. 12. 22. ~ 2018. 01. 11.(20일간)
6. 공고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www.daedeok.go.kr)
7. 의견제출기간 : 2017. 12. 22. ~ 2018. 01. 11.(20일간)
8. 의견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덕구청 건설과 방문, 우편 및 팩스 (042-608-3844)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